

#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2020. 10.



# 주요내용

---

**I. 사회적협동조합이란?**

**II.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III.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IV. 자주하는 질문**

# I.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1. 정의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설립
-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면 기본법에 따른 처벌 및 처분 대상

#### 성격

- 이익 등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음

#### 구분

- 협동조합은 법인 → 단체, 개인사업자와 다름

# I.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2. 비영리성

영리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설립	공익/비영리 목적으로 설립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	구성원 이익 분배 없음
수익사업 수행	비영리사업 + (수익사업)
상법에 근거	민법/특별법 등에 근거
회사	사단/재단법인 등

# I.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3. 법인격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구성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다수인, 법인 등이 출자하여 설립
설립	관할 세무서 신청/승인 → 법인번호 없음			설립인가 및 등기
해산	사업자 폐업신고로 같음			해산 및 청산
과세	개인소득세 적용		법인세법 적용	
권리/ 책임	사업채무 무한책임	은행계좌 개설불가 부동산 취득불가	대표자 개인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지분한도 유한책임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1. 인가요건

####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2. 총회, 이사회 활동

#### 기본법 제28조(총회)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2. 총회, 이사회 활동

####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총회 관련 필수 의무사항

-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5. 결산보고서의 승인
-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모든 협동조합은 연 1회 이상 총회 개최 필수  
- 총회의 소집과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의 후 추진

사업결산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는 총회의 필수 의결사항이며,  
- 해당 자료는 경영공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 경영공시를 위해서 **경영공시 입력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전에 결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3. 사업

####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3. 사업

####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방법)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3. 사업

#### 표준정관 제60조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  
상이어야 한다.

1. 000 사업
2. 000 사업
3. 000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000 사업
2. 000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  
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  
은 '000'으로서 '000 ... .. 000'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주사업의 종류

✓ 설립인가 판단기준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4. 법정적립금

#### 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의무 발생**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하여 재무제표 작성**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해당 재무제표를 결산총회 통해 승인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4. 법정적립금

#### 법정적립금 적립절차

2020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

2020회계연도  
결산총회 개최  
및 승인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확정

2021년  
경영공시

- ① 2020회계연도 결산
    - 미처분 이익잉여금(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발생
    -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여 재무제표 작성(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 ② 결산총회 통해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확정
  - ③ 2021년 경영공시 결산보고서 제출
-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상회하여 잉여금이 남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적립금 적립하여야 함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5. 공개 및 공시의무

####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 3. 조합원 명부
  - 4. 회계장부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사업결산 보고서
  -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6.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주 사업 미개시 및 1년 이상 미실시, 또는 설립인가 기준 미달(주 사업 40% 미만) 경우 설립인가 취소 가능**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6.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기본법 제117조(벌칙)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용, 결산보고서 미승인, 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6.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Ⅱ.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 6.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운영의 공개에 따른 서류비치 및 경영공시 미공시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목적

-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 및 일반 국민에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의 공개를 통해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지역민의 조합원 참여 계기를 마련

##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및 제96조의2(경영공시)
-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 시행령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 시행규칙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시) 정관상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한 경우  
→ 2020년 4월말까지 경영공시 작성 완료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li> <li>2020년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li> </ul>
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li> <li>2020년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li> </ul>
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대상</li> </ul>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대상</li> </ul>
이종협동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대상</li> </ul>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경영공시 절차



- ✓ 경영공시 입력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경영공시 관리 → 2020회계연도 경영공시 작성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입력사항)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영공시 자료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기간	2019.01.01~2019.12.31	
협동조합명		설립연월일		
의사결정기구	조합원 총회			
임원현황	임원 현황			
	순번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여부
	등록된 임원현황이 없습니다.			
조합원현황	조합원 현황			
	사업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명	명	명	명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사항에 명시된 법인성립연월일  
사업결산보고서상 설립연월일과 일치**

▪ **의사결정기구 : 총회, 이사회 필수 기재  
(대의원총회가 총회를 대체하지 않음)**

▪ **임원현황 : 정관상 임원정수와 일치, 이사장과 감사는  
직원 겸직 불가**

▪ **조합원현황 : 사업결산보고서상 조합원 수와 일치**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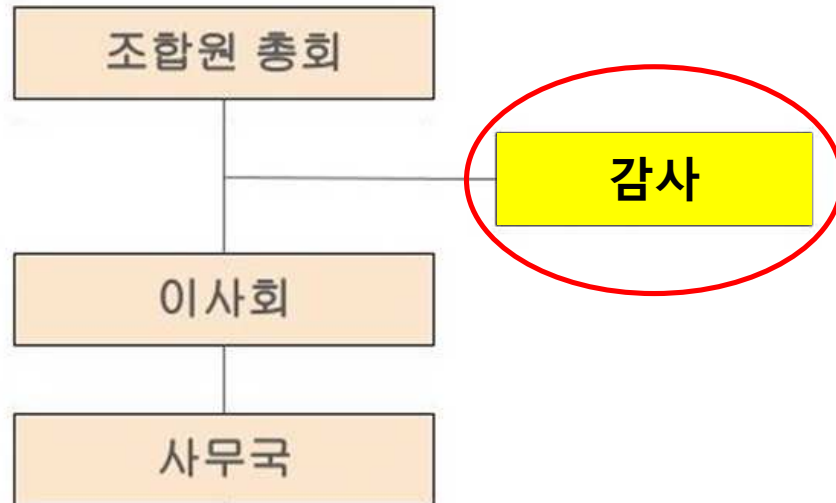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영공시 자료			
첨부파일	* 1. 정관, 규약, 규정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2. 사업결산보고서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3. 조직도 / 4.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정관 : 인가/신고 수리된 정관과 일치
- 사업결산보고서 :
  - 협동조합(연합회)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사용
- 조직도 : 조직도의 최상위는 언제나 총회이며, 감사는 이사회와 동급 또는 그 상위에 위치
-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는 연1회 이상 반드시 개최(회의록 첨부)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첨부파일)

##### 조직도(예시)



- 대의원 총회가 있더라도 총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감사의 위치 유의  
(이사회 산하가 아닌 총회 산하, 이사회와 동등 이상 위치)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사업결산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9. 29.>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년도			
조직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개요	조합원(회원) 수(+ 협동조합연합회는 합계만 작성)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b>II. 비유동부채</b>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 채 총 계</b>	
<b>II. 비유동자산</b>		<b>자 본</b>	
(1) 투자자산		I. 자본금	
- 장기성예적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III. 자본조정	
- 비품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시설장치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	
- 특허권		(미처리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산 총 계</b>		<b>자 본 총 계</b>	
		<b>부 채 및 자본 총 계</b>	

- 사업결산보고서 : 협동조합(연합회)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회계연도 : 해당 결산 회계연도 기입
- 설립연월일 : 01 기본정보 설립연월일과 일치
- 출자금 : 대차대조표 자본 항목의 조합원출자금과 일치
- 조합원 수 : 01 기본정보 조합원현황과 일치

- 대차대조표 : 02 재정 및 성과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입 -> 모든 금액은 양수 금액으로 표기 (단, 당기순손익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음수 금액 가능)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사업결산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9. 29.>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양쪽)

회계연도 : **년도**

조직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개요	조합원(회원) 수(+ 협동조합연합회는 합계한 작성) 생신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미지급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단기차입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 .....		<b>II. 비유동부채</b>	
(2) 재고자산		- 장기차입금	
- 제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원재료		- .....	
- .....		<b>부채 총계</b>	
<b>II. 비유동자산</b>		<b>자본</b>	
(1) 투자자산		<b>I. 자본금</b>	
- 장기성에적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b>III. 자본조정</b>	
- 비품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시설장차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	
- 특허권		(미처리결손금)	
- .....		- .....	
(4)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산 총계</b>		<b>자본 총계</b>	
		<b>부채 및 자본총계</b>	

-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 **반드시 금액** 기입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는 반드시 일치)
- I. 유동자산(부채) & II. 비유동자산(부채) : 하부 계정의 **합계 금액** 기재
-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등도 하부 계정의 **합계 금액** 기재
- I. 자본금 &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하부 계정의 **합계금액** 기재
- 사업기간 전기간에 걸쳐 **손실** 발생한 경우 **미처리 결손금** 계정에 금액 기입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계정 아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을 생성하여 금액 기입  
(기입되는 금액은 당기순손익이 **포함**된 금액임)
- (당기순손익) : 당기 금액은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금액과 일치**, 전기 금액은 전기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 일치
- 법정적립금** : 당기 이전까지 적립한 금액 기입  
(당기 잉여금 처분 통해 적립된 법정적립금은 차기에 표시됨)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사업결산보고서)

(단위: 원)

② 손익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관리비</b>		- 이차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등</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손익계산서 : 02 재정 및 성과에 첨부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입
-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 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VIII. 법인세차감전손익, IX. 법인세비용, X. 당기순손익 : 금액 필수 기입 (음수의 경우, 반드시 '-' 표기)
- 모든 하부 계정에 금액 기입
- X. 당기순손익은 이전 페이지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손익) 당기 금액과 일치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사업결산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9. 29.>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양식)

회계연도 : <b>년도</b>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직 개요	조합원(회원) 수(* 연합회는 합계만 작성)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위약계승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위약계승 고용형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b>① 대차대조표</b>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b>(1) 당좌자산</b>		- 단기차입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b>(2) 재고자산</b>		<b>II. 비유동부채</b>	
- 제품		- 장기차입금	
- 원재료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b>II. 비유동자산</b>		<b>부 채 총 계</b>	
<b>(1) 무자자산</b>		<b>자본</b>	
- 장기성예적금		<b>I. 자본금</b>	
- .....		- 조합원출자금	
<b>(2) 유형자산</b>		<b>II. 자본잉여금</b>	
- 비품		<b>III. 자본조정</b>	
- 시설장차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차량운반구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		- 법정적립금	
<b>(3) 무형자산</b>		- 임의적립금	
- 특허권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 .....	
<b>(4) 기타비유동자산</b>		(단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 본 총 계</b>	
<b>자 산 총 계</b>		<b>부 채 및 자본총 계</b>	

- 사업결산보고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회계연도 : 해당 결산 회계연도 기입
- 설립연월일 : 01 기본정보 설립연월일과 일치
- 출자금 : 대차대조표 자본 항목의 조합원출자금과 일치
- 조합원 수 : 01 기본정보 조합원현황과 일치
- 주사업유형 : 설립인가를 받은 주 사업 유형에 표시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유형 모두 표시), 04. 사업 결과 주 사업 유형과 일치

- 대차대조표 : 02 재정 및 성과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입 -> 모든 금액은 양수 금액으로 표기 (단, 당기순손익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음수 금액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사업결산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9. 29.>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양쪽)

회계연도 : 년도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원		

조직 개요

조합원(회원) 수(\* 연합회는 합계만 작성)  
 생산자( ) 소비자( ) 직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합계( ) 명

주 사업 유형 [ ] 지역사업형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취약계층 고용형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 ] 위탁사업형 [ ] 기타 공익증진형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b>자산</b>		<b>부채</b>	
<b>I. 유동자산</b>		<b>I. 유동부채</b>	
(1) 당좌자산		- 단기차입금	
- 현금		- 예수금	
- 보통예금		- 미지급금	
- 미수금		- 선수금	
- 선급금		- .....	
(2) 재고자산		<b>II. 비유동부채</b>	
- 제품		- 장기차입금	
- 원재료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b>II. 비유동자산</b>		<b>자본</b>	
(1) 투자자산		<b>I. 자본금</b>	
- 장기성예적금		- 조합원출자금	
- .....		<b>II. 자본잉여금</b>	
(2) 유형자산		<b>III. 자본조정</b>	
- 비품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 시설장차		<b>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b>	
- 차량운반구		- 법정적립금	
- .....		- 임의적립금	
(3) 무형자산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특허권		- .....	
(4) 기타비유동자산		(단기순손익)	
- 임차보증금		당기 : 원	
- .....		전기 : 원	
<b>자산 총계</b>		<b>자본 총계</b>	
		<b>부채 및 자본 총계</b>	

-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 반드시 금액 기입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는 반드시 일치)
- I. 유동자산(부채) & II. 비유동자산(부채): 하부 계정 **합계 금액** 기재
-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등도 하부 계정의 **합계 금액** 기재
- I. 자본금 & 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하부 계정의 **합계 금액** 기재
- 사업기간 전기간에 걸쳐 손실 발생 경우 미처리 결손금 계정에 금액 기입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계정 아래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생성하여 금액 기입 (기입되는 금액은 당기순손익이 포함된 금액임)
- (당기순손익) : 당기 금액은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금액과 일치, 전기 금액은 전기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 일치
- 법정적립금 : 당기 이전까지 적립한 금액 기입 (당기 잉여금 처분 통해 적립된 법정적립금은 차기에 표시됨)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1. 기본정보(사업결산보고서)

(단위: 원)

② 손익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b>I. 매출액</b>		<b>VI. 영업외수익</b>	
- 000사업 수입		- 이자수익	
- 000 수입		- 지원금	
- .....		- 후원금	
<b>II. 매출원가</b>		- 회비	
- 판매원가		- 잡이익	
- 서비스원가		- 보조금	
- .....		- .....	
<b>III. 매출총손익</b>		<b>VII. 영업외비용</b>	
<b>IV. 판매비와관리비</b>		- 이자비용	
- 임직원급여		- 기부금	
- 퇴직급여		- 잡손실	
- 상여금		- .....	
- 복리후생비		<b>VIII. 법인세차감전손익</b>	
- 여비교통비		<b>IX. 법인세종</b>	
- 통신비		<b>X. 당기순손익</b>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회의비			
-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			
- 업무추진비			
- 교육훈련비			
- .....			
<b>V. 영업손익</b>			

- 손익계산서 : 02 재정 및 성과에 첨부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입
-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 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VIII. 법인세차감전손익, IX. 법인세비용, X. 당기순손익 : 금액 필수 기입 (음수의 경우, 반드시 '-' 표기)
- 모든 하부 계정에 금액 기입
- X. 당기순손익은 이전 페이지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손익) 당기 금액과 일치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2. 재정 및 성과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영공시자료						
회계연도	2019	협동조합명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자산	원 (자산 = 부채 + 자본)				
	부채	원	자본	원		
	자본 상세내역					
	조합원출자금	원	법정적립금	원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					
	매출액	원				
	영업손익	원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원				
	당기순손익	원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납품 실적 및 서비스 실적	납품 실적 및 서비스 실적입력 폼					
	순번	구분	발주기관	계약기간	실적유형	사업명
		사업위탁방식		계약내용		계약금액
첨부파일	결산보고 증빙 (재무제표와 손익 계산서 등)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자산, 부채, 자본, 조합원출자금, 법정적립금 : **사업결산보고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

▪ 법정적립금 : **전기 적립된 금액 기입**  
(당기 잉여금 처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차기연도에 표시됨)

▪ 매출액,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손익 : **사업결산보고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 (음수의 금액인 경우 반드시 '－' 표기)

▪ 첨부파일 : 사업결산보고서가 아닌 **비교식 재무제표 첨부**  
(법정적립금 확인을 위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  
계산서** 필수 첨부)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2. 재정 및 성과(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당)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3월 31일

제 5(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2019년 03월 31일

회사명 : **비교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6(당)기 금 액	제 5(전기)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0,751,364	794,19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94,194	-10,640,406
2. 회 계 번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19,957,170	11,434,600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0	0
1.	0	0
2.	0	0
합 계	20,751,364	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6,225,409	0
1.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6,225,409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0
가. 현 금 배 당	0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0,751,364	794,194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4,525,955**

###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및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

### (비교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순서

- 제5(전기)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6(당)기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30%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 **법정적립금**
- 합계 - 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2. 재정 및 성과(법정적립금)

과 목	제 6(당)기 금 액	제 5(전기) 금 액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0,751,364	794,194
1. 전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94,194	-10,640,406
2. 회 계 번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이 익	19,957,170	11,434,600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0	0
1.	0	0
2.	0	0
합 계	20,751,364	0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6,225,409	0
1. 이 익 준 비 금	6,225,409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0	0
가. 현 금 배 당	0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IV. 차 기 이 월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0,751,364	794,194

### [법정적립금 적립]

1. 결산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10%(협동조합) 또는 30%(사회적협동조합) 적립 여부 보고 및 승인 득함 (승인 내역은 총회 의사록에 포함)

2. 총회의 승인을 득한 법정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단, 당기 적립된 법정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만 나타나고 대차대조표는 차기연도에 반영

### [법정적립금 적립 예외 사항]

전기까지의 미처리 결손금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 총회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하지 않은 법정적립금은 인정되지 않음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법정적립금 계정을 생성하여 해당 계정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
- 이익준비금 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정 등 타 계정 인정되지 않음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3. 활동 상황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영공시자료						
회계연도	2019	협동조합명				
총회 활동 상황	총회 활동 상황					
	일시	장소	조합원 / 회원	참석자	결정사항	총회구분
	20190218	전주시 흥남로4길82	5명	5명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총회
20200325	전주시 흥남로4길82	5명	5명	2019년 사업결산 심의의결 2020년 사업계획	정기총회	
대의원 총회 활동 상황	※ 계획내역 없음					
이사회 활동 상황	이사회 활동 상황					
	일시	장소	일월	참석자	결정사항	비고
	20190116	백 사무실	4명	4명	2019년 정기총회 준비(정리개정 논의)	
	20190401	백 사무실	4명	4명	공휴공간마실 운영자 채용	
	20190620	백 사무실	4명	8명	상천동 사회주택 운영 공모사업 참여	
	20200128	백 사무실	4명	8명	정년인원 권고사과	
20200214	백 사무실	4명	4명	2020년 정기총회 준비 조합 운영규정		
기타 활동 상황	※ 계획내역 없음					

▪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는 연1회 이상 반드시 개최

▪ 총회 활동 상황은 회계연도 중 개최된 총회와 당해연도에 개최한 결산총회 결과까지 기재

▪ 이사회 활동 상황은 회계연도 중 개최된 이사회 기재 (결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가 있는 경우 포함)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영공시 자료			
회계연도	2019	협동조합명	
사업계획	1. 노인장기요양 사업(재가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조합원 홍보 - 각종 회의시 홍보, 소식지 발행, 인사장 홍보 <input type="checkbox"/> 노인단체 홍보 - 면, 동 마을별 밀착 홍보 활동		
사업결과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재가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① 목적 :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② 추진방법 -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재가요양)		

- 해당연도 사업계획 : 해당연도 사업계획으로 총회의 승인 득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해당연도 사업결과 : 해당연도 총회의 승인 득한 **사업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 (정관 '사업의 종류' 참고하여 작성)
- 협동조합 **필수사업** 수행 계획 및 여부 **반드시 기재**
  -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 ②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사회적협동조합)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영공시자료			
회계연도	2019	협동조합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지역사회 실적		
	연월일	내용	
인가 부처 감독상황과 조치 결과	인가 부처 감독상황과 조치 결과		
	연월일	내용	
주사업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 지역사회 실적 : 주 사업 이외의 별도 기여한 사항만 기재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성 생략)

▪ 인가부처 감독상황과 조치결과 : 해당연도 중에 인가부처 감독사항과 조치 결과 요약하여 기재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성 생략)

▪ 주 사업 유형 : **사업결산보고서** 주 사업 유형과 일치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지역사업형)

구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계 (A)				
지역사업 <b>추가</b> 소계 (B)				
○○사업 <b>삭제</b>				
□□사업 <b>삭제</b>				
기타사업 <b>추가</b> 소계				
○○사업 <b>삭제</b>				
□□사업 <b>삭제</b>				
지역사업 비율(C=B/A) (%)				
첨부파일	1.사업결과 증빙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업비 지출과 서비스 공급(인원/시간/회)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하여 주 사업 비중을 산정
- 시스템에 입력한 금액(총계/소계) 및 지역사업 비율과 증빙서류상 금액 (총계/소계) 및 지역사업 비율 일치
- 사업비는 수입(매출액)이 아닌 지출 금액 기재
- 사업비는 사업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내에서 산정 (사업비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사업결과 증빙 : 주 사업과 기타사업이 구분경리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 (구분경리가 없는 경우 주 사업 사업비 지출내역 제출)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지역사업형)

구분경리된 손익계산서(예시)

과목	제 23 (당)기		
	총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b>I. 사업수익</b>	<b>300,797,597</b>	<b>282,822,597</b>	<b>17,975,000</b>
연회비	7,480,000	7,480,000	0
특별회비	68,810,000	68,810,000	0
회비	160,050,597	160,050,597	0
작가지급료	17,975,000		17,975,000
작가지급료	602,000	602,000	0
고교생특별회비	4,880,000	4,880,000	0
특별후원금	41,000,000	41,000,000	0
<b>II. 사업비용</b>	<b>182,051,513</b>	<b>182,051,513</b>	<b>0</b>
<b>1. 사업수행비용</b>	<b>40,107,433</b>	<b>40,107,433</b>	
고교생특별회비	7,293,634	7,293,634	0
내일언어능작가비	23,818,819	23,818,819	0
기타사업비	2,193,480	2,193,480	0
다외연대비	6,801,500	6,801,500	0
<b>2. 일반관리비용</b>	<b>141,944,080</b>	<b>141,944,080</b>	
직원급여	105,037,440	105,037,440	0
활동비용	16,805,000	16,805,000	0
보험료	11,753,490	11,753,490	0
복리후생비	2,706,990	2,706,990	0
도서인쇄비	337,000	337,000	0
업무추진비	3,769,400	3,769,400	0
일반수용비	1,534,760	1,534,760	0
<b>III. 사업이익</b>	<b>118,746,084</b>	<b>100,771,084</b>	<b>17,975,000</b>
<b>IV. 사업외수익</b>	<b>8,540,602</b>	<b>8,540,602</b>	
이자이익	5,178,792	5,178,792	0
잡이익	3,361,810	3,361,810	0
<b>V. 사업외비용</b>	<b>1,770,410</b>	<b>1,770,410</b>	
이자비용	1,770,410	1,770,410	0
<b>Ⅷ. 법인세차감전이익</b>	<b>125,516,276</b>	<b>107,541,276</b>	<b>17,975,000</b>
<b>IX. 법인세등</b>			<b>0</b>
<b>X. 당기순이익</b>	<b>125,516,276</b>	<b>107,541,276</b>	<b>17,975,000</b>

주사업 사업비 지출내역(예시)

주 사업 사업비 지출 내역 (결과보고 증빙)

회계연도	2018 년도	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기재)	
구분		사업비 (원)		
		회당 연도 예산	회당 연도 결산	
총 계 (A)				
주 사업 (정관 참조)	AA사업 (주사업의 기재 매출원가)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		
		---		
	BB사업			
	CC사업			
소 계 (B)				
기타 사업	기타사업1 (기타사업명 기재)			
	기타사업2			
	기타사업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소 계				
주 사업 비율(C=B/A)(%)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구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계 (A)		
취약계층 (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취약계층비율 (C=B/A) (%)		

첨부파일	1.사업결과 증빙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 주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공급받은 대상 숫자 (인원수, 시간, 횟수)를 취약계층과 기타(비취약계층)로 구분하여 기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인원 기준(예시)

이 용 자 현 황(방문요양)						
번호	수급유형	이름	구분	등급	요양사	기타
1	수급자	강 (76)	기초	4등급	김	
2	일반	강 (89)	경감	4등급	안	
3	일반	강 (82)	일반	3등급	이	
4	수급자	강 (92)	기초	3등급	김	
5	일반	강 (94)	경감	4등급	최	
6	수급자	고 (76)	기초	4등급	김	
7	수급자	김 (88)	일반	4등급	정	
8	일반	김 (80)	일반	4등급	백	
9	일반	김 (78)	일반	4등급	정	
10	일반	김 (75)	일반	4등급	주	

- 사업결과 증빙 :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업에 **어떤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서비스 **이용자 목록**과 **취약계층 대상 여부 및 해당 유형**을 기록한 자체 양식을 제출하면 증빙으로 인정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의 범위	
구분	범위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장기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산정 위해 **취약계층 인정범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취약계층 고용형)

구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계 (A)				
취약계층 (B)				
기타				
취약계층비율 (C=B/A) (%)				
첨부파일	1.사업결과 증빙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산정 위해 **전체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해당자의 **취약계층 해당 사실 증빙** 모두 필요

#### 취약계층 유형별 증빙 자료

##### <주요 취약계층 유형별 증빙 서류>

유형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저소득자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가구원 전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청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신청한 날까지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장기실직자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신청한 날까지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외국인등록증

- 사업결과 증빙 : **전체 고용인원 파악**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및 **취약계층별 증빙자료** 첨부
-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 별도 증빙 필요 없음 (고령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에서 생년월일 확인 가능)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위탁사업형)

구분	사업비 (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계 (A)		
위탁사업 <b>추가</b> 소개 (B)		
○ 사업(위탁기관)      삭제		
□ 사업(위탁기관)      삭제		
자체사업 <b>추가</b> 소개		
○ 사업      삭제		
□ 사업      삭제		
위탁사업 비율(C=B/A) (%)		
첨부파일	1.사업결과 증빙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위탁사업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공공기관 등의 위탁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위탁사업형은 수입(매출액)을 판단 기준으로 함**
- **사업비 총계가 사업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일치**
- **사업결과 증빙 : 위탁사업비는 각 사업별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대금을 청구한 세금계산서 등 위탁자와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기타 공익증진형)

구분	사업비 (월)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계 (A)				
공익사업 <b>추가</b> 소계 (B)				
○○사업 <b>삭제</b>				
□□사업 <b>삭제</b>				
기타사업 <b>추가</b> 소계				
○○사업 <b>삭제</b>				
□□사업 <b>삭제</b>				
공익사업 비율(C=B/A) (%)				
첨부파일	1.사업결과 증빙서류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업비 지출과 서비스 공급(대상인원/시간/회)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하여 주 사업 비중을 산정
- 시스템에 입력한 **금액(총계/소계) 및 지역사업 비율**과 증빙서류의 **금액(총계/소계) 및 지역사업 비율 일치**

- 사업비의 경우 **수입(매출액)이 아닌 지출 금액** 기재
- 사업비는 사업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내에서 산정**  
(사업비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합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사업결과 증빙 : 주 사업과 기타사업이 **구분경리된 손익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경리가 없는 경우 **주사업 사업비 지출내역** 제출)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기타 공익증진형)

구분경리된 손익계산서(예시)

과 목	제 23 (당)기		
	총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b>I. 사업수익</b>	<b>300,797,597</b>	<b>282,822,597</b>	<b>17,975,000</b>
연회비	7,480,000	7,480,000	0
특별회비	68,810,000	68,810,000	0
회가지광고	160,050,597	160,050,597	0
작가지구독료	17,975,000		17,975,000
작가지구독료	602,000	602,000	0
고교생택일장회비	4,880,000	4,880,000	0
특별후원금	41,000,000	41,000,000	0
<b>II. 사업비용</b>	<b>182,051,513</b>	<b>182,051,513</b>	<b>0</b>
<b>1. 사업수행비용</b>	<b>40,107,433</b>	<b>40,107,433</b>	
고교생택일장비	7,293,634	7,293,634	0
내일언어는작가비	23,818,819	23,818,819	0
기타사업비	2,193,480	2,193,480	0
대의연대비	6,801,500	6,801,500	0
<b>2. 일반관리비용</b>	<b>141,944,080</b>	<b>141,944,080</b>	
적립금어	105,037,440	105,037,440	0
활동종비	16,805,000	16,805,000	0
보험료	11,753,490	11,753,490	0
복리후생비	2,706,990	2,706,990	0
도서인쇄비	337,000	337,000	0
업무추진비	3,769,400	3,769,400	0
일반수용비	1,534,760	1,534,760	0
<b>III. 사업이익</b>	<b>118,746,084</b>	<b>100,771,084</b>	<b>17,975,000</b>
<b>IV. 사업외수익</b>	<b>8,540,602</b>	<b>8,540,602</b>	
이자수익	5,178,792	5,178,792	0
잡이익	3,361,810	3,361,810	0
<b>V. 사업외비용</b>	<b>1,770,410</b>	<b>1,770,410</b>	
미지비용	1,770,410	1,770,410	0
<b>VI. 법인세차감전이익</b>	<b>125,516,276</b>	<b>107,541,276</b>	<b>17,975,000</b>
<b>IX. 법인세비용</b>			<b>0</b>
<b>X. 당기순이익</b>	<b>125,516,276</b>	<b>107,541,276</b>	<b>17,975,000</b>

주사업 사업비 지출내역(예시)

주 사업 사업비 지출 내역 (결과보고 증빙)

회계연도	2018 년도		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기재)	
구분	사업비 (원)				
	회당 연도 예산		회당 연도 결산		
총 계 (A)					
주 사업 (정관 참조)	AA사업 (주사업명 기재) 매출원가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				
	...				
	BB사업				
	CC사업				
소 계 (B)					
기타 사업	기타사업1 (기타사업명 기재)	기타사업1			
		기타사업2			
		기타사업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소 계					
주 사업 비율(C=B/A)(%)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주 사업 미이행)

구분	사회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계 (A)		
위탁계승 (B)		
기타		
위탁계승비율 (C=B/A) (%)		

첨부파일 | 1.사업결과 증명서류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구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해당 연도 계획	해당 연도 실적
총계 (A)				
위탁계승 (B)				
기타				
위탁계승비율 (C=B/A) (%)				

첨부파일 | 1.사업결과 증명서류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 사업 미이행

지역사업별 사업비(원)	지역 사업 현황			
	구분	사업비(원)		비율(C=B/A)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계(A)		0	0	0%
지역사업 I 소계(B)		0	0	0%
기타사업 I 소계		0	0	0%
지역사업 비율(C=B/A)		0%	0%	0%

미이행 사유 | 결정할 수 없는 조항인만큼 반영하지 않음. 따라서 2019년 계획된 사업은 2020년 진행할 예정임.

- 주 사업 유형이 두 가지 이상인 혼합형은 해당 유형에 사업 결과 모두 기재
- 각 유형의 **비율 합산이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주 사업 비율이 **40% 미달**인 경우 **미이행 사유 반드시 기재**

### Ⅲ.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이행

#### 4. 사업결과(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지역사업형 사업비(원)	지역 사업형		
	구분	사업비(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총계(A)	0	0
지역사업   소계(B)	0	0	
기타사업   소계(B)	0	0	
지역사업 비율(C=B/A)	0%	0%	

미이행 사유	
--------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실시 여부	미실시
-------------------------	-----

- 사회적협동조합 중 정관상 소액대출, 상호부조 조항 있는 경우 작성
- 관련 조항은 있으나 2020회계연도 중 사업 실적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보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00년 12월 31일 현재)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체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구호형 <input type="checkbox"/> 취약사업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익증진형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 IV. 자주하는 질문

---

### 경영공시 의무위반

Q.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처 및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실시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부처의 관리감독(시정명령, 과태료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경영공시 시기

Q.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정한 협동조합은 "6월말까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경영공시 자료 공시

### 경영공시 자료

Q. 협동조합이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정관, 규약, 규정 등과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조직도, 사업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업결과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IV. 자주하는 질문

### 회원가입

Q. 경영공시 신규 기관입니다. 기관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경영공시 입력을 위하여 "회원가입" 필요

###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시·도지사 신고, 중앙부처 인가받은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이사장 인증서, 법인 인증서 필요)
- 이사장,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 변경 요청
- 조합원 정보 등록 : 등록된 조합원 정보로 로그인하여 경영공시 자료 등록 가능
- 회원가입시 오류사항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 : 031-697-7745



## IV. 자주하는 질문

### 협동조합 기본정보 수정

Q. 협동조합 기본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기관명, 주 사업 유형 등 기본정보는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가 협동조합 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함

협동조합 소개 관리 >

협동조합 상품등록 >

**경영공시 관리 >**

회원정보수정 >

회원탈퇴 >

### 경영공시 관리

※ 기관정보 수정  
- 경영공시 자료중 협동조합명, 이사장 정보(성함), 협동조합 소재지 주소, 주사업유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정해드릴 수 없는 항목이오니 해당 소관부처로 연락후 수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관부처 문의 031-697-7734](tel:031-697-7734)

※ 경영공시 자료  
- 경영공시 자료는 지자체 혹은 소관부처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후 공개됩니다.  
- 등록된 경영공시 자료가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신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 경영공시 작성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 조치방법  
- 호환성 보기 설정 : (웹 브라우저)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coop.go.kr 추가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설정 :  
(웹 브라우저)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http://www.coop.go.kr 추가  
- 기타 문의 : 031-697-7745

1:1 문의 게시판

경영공시 관련 FAQ 및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IV. 자주하는 질문

## 상시상담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소통마당” 클릭 → 상시상담



▪ 홈페이지 우측 “상시상담 게시판” 클릭 이동

## 《교육내용 관련 문의(Q&A)》

- 협동조합 사이트 상시상담 게시판
- 한길회계법인 E-MAIL 문의 : [hangil1903@daum.net](mailto:hangil1903@daum.net)



**Hangil  
Accounting  
Corporation**  
한길회계법인